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박 석 의원
- 의안번호 : 제1010호
-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 안 이 유

- 도시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숲 등을 조성·관리하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5조).
- 나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용어 변경(안 제13조).
- 다. 도시숲지원센터 수행사업 중 관리지표 운영과 도시숲등 측정·평가 분리 및 신설(안 제29조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하기 위한 것임.

나. 검토 의견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도시숲법”)은 산업화·도시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,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도시숲, 생활숲, 가로수의 확대 등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.
- 도시숲법 제정 후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시숲, 생활숲, 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)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2021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¹⁾ 하고 있음.

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·공간 확보, 기반 조성 노력 및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 등을 정하고 있으며, 동 조례에서도 제5조 시장의 책무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음.

- 안 제5조는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

1) [시행 2022. 7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300호, 2021. 12. 30., 제정]

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·관리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, 기존의 물리적인 ‘토지·공간 확보’와 정책적인 ‘조성·관리 활성화’ 이외에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인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 판단됨.

-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폭염과 화재²⁾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27일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(global warming) 시대가 끝나고, 지구 열대화(글로벌 보일링, global boiling)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힌바, 서울시에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계획 및 환경설계 측면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됨.
- 안 제29조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현재 ‘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·평가와 운영’으로 된 것을 ‘관리지표 운영’과 ‘도시숲등 측정·평가’로 분리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평가를 도모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2) 폭염 : 이탈리아, 스페인, 그리스, 튀르키예 등 유럽 최고기온 기록.

유럽 연합의 기후 감시 서비스 코페르니쿠스(“2023년 6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6월”)

화재 : 2023년 4월(캐나다 산불), 7월(그리스, 이탈리아 산불), 8월(하와이 산불), 2019년(호주 산불), 2023년 4월(충남, 충북 지역 중심 서부지역 산불), 4월(강릉 산불).